

참고1

스프링클러설비 설치 · 관리 소방시설 종류 현황

- 특정소방대상물*에 설치 및 관리대상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

*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: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 등

구분	설치 기준		설치대상
	면적	기타	
6층 이상 특별소방대상물	-	-	모든 총
특정소방대상물	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	연면적 5,000㎡ 이상	-
	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	-	수용인원 100명 이상
		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이 지하층 또는 무정층인 경우 비단면적 500㎡ 이상, 그 외 1,000㎡ 이상	-
		무대부가 지하층, 무정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㎡ 이상, 그 외 500㎡ 이상	-
세부용도별	판매시설, 운수시설, 창고시설(물류터미널 한정)	-	수용인원 500명 이상
		바닥면적 5,000㎡ 이상	-
특정소방대상물	조사원, 신후조모원, 정신의료기관,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 숙박시설	바닥면적 600㎡ 이상	-
	창고시설(물류터미널 제외)	바닥면적 5,000㎡ 이상	-
	랙식창고	랙이 설치된 바닥면적 1,500㎡ 이상	높이 10m 이상 초과
	공장, 창고시설	-	「화재예방법시행령」별표2에 정하는 수량의 1,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·취급하는 시설
		-	「운지력인증법시행령」제2조제1호에 따른 종·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·처리하는 서비스가 있는 저장시설
	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	창고시설(물류터미널 한정) 중 바닥면적 합계가 2,500㎡ 이상	모든 총
교정 및 군사시설		-	창고시설(물류터미널 한정) 중 수용인원 250명 이상
		창고시설(물류터미널 제외) 중 바닥면적 합계가 2,500㎡ 이상	-
		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지하층, 무정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바닥 면적이 500㎡ 이상	-
	랙식 창고 중 바닥면적 750㎡ 이상	-	해당 시설
지하가(터미널 제외)		-	공장 또는 창고 시설 중 「화재 예방법시행령」별표2에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·취급하는 시설
	연면적 1,000㎡ 이상	보호감호소, 교도소, 구치소 및 그 지소, 보호관찰소 등	해당 장소
		「운모관법」에 따른 노동시설로 사용	해당 장소
발전시설		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따른 유치장	해당 장소
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문실 또는 연결 통로	-	-	해당장소